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301

발의연월일: 2022. 9. 7.

발 의 자:배준영·조수진·정우택

조은희 · 양금희 · 정동만

김용판 • 윤창현 • 윤재옥

김예지 • 유경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나 일정 면적 이하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두어, 읍·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,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,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국민의 주거생활 및 관리·경비·청소 용역업체의 고용 안정화를 위하여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특례를 지속할 필 요가 있음.

이에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,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4호의2, 제5호"를 "제5호" 로, "적용하며"를 "적용하며, 제4호의2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"로, "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"를 "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<u>제4</u>	<u>제5</u>
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	<u>ō</u> ,
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	
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	
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	
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	
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<u>적용</u>	<u>적용하며, 제4</u>
<u>하며,</u>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	호의2는 2025년 12월 31일까지
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
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	
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	체결된 것
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	<u>에만 적용하며</u>
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